

「구미시 마이스(MICE)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강승수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: 김재우 의원 외 6인

3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산업적·지리적·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마이스(MICE)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시장의 책무(안 제4조)
-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·시행 등(안 제5조)
- 마이스산업 육성사업(안 제6조)
- 재정 지원(안 제7조)
- 전담조직 설치·운영(안 제8조)
- 마이스산업 정책 협의회(안 제9조~제11조)
- 사무의 위탁(안 제13조)
- 홍보대사 위촉(안 제14조)
- 포상(안 제15조)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5조, 제6조, 제9조, 제16조제2항제1호
-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
-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전시산업발전법」의 취지를 반영하여 마이스산업 육성계획 수립, 전담조직 설치, 재정지원, 정책협의회 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구미컨벤션센터 용도변경과 연계하여 마이스 정책 추진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도시브랜드·관광산업·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구미시는 국제회의업 등록 사업체, 전문인력, 숙박 인프라 등 관련 기반이 제한적이고 전담조직 부재, 교통 접근성 확보, 관광 콘텐츠 보강 등 개선 과제가 존재하므로, 정책 총괄 전담조직 구축, 세부 실행계획 수립,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

- 또한 전담 조직이 마이스 연계 관광 분야 육성에만 치중되지 않도록, 국제행사 운영·지원 등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 이에 따라 전담조직의 적정 규모, 역할, 인력 배치 수준과 같은 조직 구성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요구됨.
- 아울러, 향후 중·대형 국제 행사 유치 시 예산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, 지방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단계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, 행사 규모별 지원 상한액 및 우선지원 분야 등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.